

신법감시시

Justice Watch Newsletter Vol.26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자료]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주요답변 모음

사법감시시

26호

- 1 발간사
- 4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 4 기고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전수안 부장판사)
 - 8 기고Ⅱ.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박재완 재판연구원)
 - 11 서면 인터뷰 답변(한동수 판사 외 3명)
- 20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주요답변 모음

‘사법감시 제26호’를 발행하며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법개혁의 과업들이 그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법률안의 형태를 갖추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서게 될 즈음인 지난 9월 26일 이용훈 변호사가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판중심주의, 참·배심의 문제, 로스쿨제도의 도입, 군사법제도,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제기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들은 나름의 제도개선안의 형태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에 대하여 또다시 개선이니 혹은 개악이니 하는 양극단에 걸친 평가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 대법원장의 취임은 사법의 민주화와 법치의 실현이라는 이 시대의 개혁과제를 이루어나가는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법제도개혁의 작업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현안의 과제와 더불어, 사법부 과거청산의 문제나 지나치게 관료화·계층화한 사법조직과 인사제도의 문제 등 100여년에 걸친 우리 사법사에서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본원적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것이 오늘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까지 물경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게 되는 등 그의 제청권, 추천권의 행사 여하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실질이 좌우되기에 이르고 그 결과 향후 우리 사법체계의 운영방식 자체가 그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는 기묘한 양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법감시**는 신임 대법원장에 대하여 이 개혁과제와 제반의 현안문제들에 관하여 몇 가지 굳은 당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심내용들은 최근 사법개혁의 기치 아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이며, 대법원장의 인선과정이나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재차 거론되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은 우리 사법사의 발전과정에 있어 중대한 전환국면에 해당하며, 그리고 그 방향과 성과는 신임 대법원장의 의지와 능력 여하에 영향 받는 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당부들의 중요성은 결코 저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감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요청과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법감시는 고등법원부장판사로부터 지방법원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력과 지향을 가진 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신임 대법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고 또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의 형태로 이들이 제시한 사항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고민해 왔던 사법체계의 문제점들을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의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법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오들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심 등을 통한 과감한 교정의 작업은 법원 내부에서도 의연한 개혁과제로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중앙집권화하고 또 관료화되어 온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고법부장으로서의 ‘승진’ 제도나 근무평정제도 등 인

사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법관계충구조를 해소하고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와 분권의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민주화되고 개별 법관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사법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개혁과제를 구성해 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단이나 여성법관의 증원 등 법원구성의 다양화, 법원 내외의 의사소통창구의 확대, 법관 및 재판부의 증원·증설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고통을 감내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로써 대표되는 법원 내부의 개혁 아젠다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지면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다 표출되지 못하였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만, 이 귀한 의견들로부터 우리는 이 시대가 결코 놓쳐서는 아니되는 중차대한 개혁의 과제들이 의연히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으며, 그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의지와 열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신임 대법원장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외의 인식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입장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법감시**는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하여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의 과거사정리의 문제에서부터 법관인사제도, 대법관의 임명과 다양성확보방안, 사법관료제의 개선, 전관예우 및 법관윤리의 문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임 대법원장의 답변은 국회라는 정치의 장을 고려해서인지 대부분 유보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개선·개혁의 방안들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내는, 개혁주체로서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니 차후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소극적 미봉의 입장이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기 나름으로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의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개혁의 의지가 여전한 법조관료의 편협한 시야에 묻혀 버린 듯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졸탁동기(卒琢同機)라는 말로 형용합니다. 병아리와 어미닭의 호흡이 일치하는 그 순간 갑갑하던 껍질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법관들의 의견들에서도 보았듯이 사법개혁을 향한 시민사회의 의지나 법원 내부의 의지는 충분해 있습니다. 그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도 이 시대의 이성인 상당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졸탁동기의 깨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요한 단초를 신임 대법원장이 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변호사경력을 통하여 “법원과 국민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지난 날의 과오를 지적하고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법원 구성원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법감시**는 이 다짐을 예의주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미시적 개혁과제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법치의 실질화를 이루는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의 법원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될 것인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말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의견을 보내 주신 여섯 분의 판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 상 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자료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주요답변 모음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맞추어, 평소 법원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법관들에게 신임 대법원장이 해야 할 법원개혁에 대한 서면인터뷰 또는 기고문을 요청하였으며 그중 2명의 현직 법관은 기고문을 보내왔으며, 4명의 현직 법관은 서면인터뷰에 응하였다.
- 비록 6명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적은 수의 현직 법관들의 글을 소개하지만, 이들의 견해는 신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안팎의 사람들이 법원개혁과 사법부의 거듭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하고 토론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 현직 법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익명을 원하신 법관의 경우에는 이름과 근무지는 제시하지 않으며, 다만 법원재직 경륜을 참고할 수 있는 사항만을 제시한다. 서면인터뷰 답변 및 기고문을 보내주신 이들은 법원행정처나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근무하며 법원 근무경력도 다양한 이들로서, 아래와 같다.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18회) / 박재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시 31회) / 한동수 특허법원 판사(사시 34회)
A판사 : 지법 부장판사급, 사시 25회 / B판사 : 지법 부장판사급, 사시 28회 / C판사 : 지법 판사급 사시 41회

I 기고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18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

1. 생각지도 않게 사법감시의 원고요청을 받았다.

감시대상자가 감시기관에 무슨 글을? 이라고 일순 생각하였으나, 정중하고 간곡한 요청에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다음의 시로 대신한다.

“내가 어느덧 / 늙은이의 나이가 되어 / 사랑스러운 것이 그냥 / 사랑스럽게 보이고 / 우스운 것이 거침없이 우습게 보이네”
-마중기의 시 ‘상처’ 중에서.

2. 사람들은 꿈을 꾼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면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을 맞이한 국민도 법원도 꿈을 꾼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법원장의 꿈은 무엇일까. 5년간의 재야경력으로 법원 밖에 느끼는 법원의 문제점을 많이 체험하고 통감한 신임 대법원장의 꿈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꿈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의 꿈이 법원구성원들의 꿈과도 일치하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꿈은 좋은 재판을 받는 것, 법원구성원들의 꿈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일 터.

3. 법원은 모두가 꿈꾸는 좋은 재판을 해 왔는가.

평가는 고객이나 수요자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이나 법원 밖의 평가를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거나, 평가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판진행 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영향력 행사가 금지될 뿐,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비난으로만 받아들이 필요도 없다. 소신껏 한 판결에 대한 비판은 검허하게 경청하거나 악의적인 비난은 무시하면 된다.

과거의 재판 중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고 있는데도,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재판의 결과를 비판할 수 없다고 우기기만 하는 건 우습다. 상소나 재심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말로 이상스럽게 보이는 재판은 이상스럽다고 말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동안 누차 지적받아 온 과거의 판결들에 대하여는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하여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즉시 이를 위한 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후배 법관들이 내내 그 짐을 떠안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 불행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적잖은 세월 재판을 해온 필자도 법원의 과거 재판이 대체로 잘 되어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행한 시대를 거쳐 보

지 않은 일부 법관들 사이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하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인식도 있으나, 인구에 회자되는 부끄러운 판결들은 이미 그 과거에도 많은 판사들이 의아해하거나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분노하였고 집에 가서 가족들 눈총을 받았던 판결이다. 법원은 지적받는 바와 같은 정말로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 주었어야 할 몇몇 판결들을 잘 하라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을 잘했다는 것이 무슨 변명이 되겠는가.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법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하여서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의 가슴을 언제까지나 아프게 방치하면 안 된다.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 국민과 법원을 화해·화합케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아가 젊은 후배들이 미래의 '잘못된 과거사'를 만드는 불행을 반복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권위로써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여 입법을 제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필자는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 국가보안법 7조 5항 등의 법리적 문제점을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각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임하거나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입법 당시부터 지적을 받은 조항임에도 시행 10여년이 지나도록 운용 실태에 대해 전혀 알려진 내용이 없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199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 많은 판사들이 공감하였음에도 판결은 이후 더욱 경직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장차 후임 대법원장이 또 곤욕을 치를 소지는 없는가.

4.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의 형사재판 경력은 재야·재조를 통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벌써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각성하라고 일갈함으로써 판사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필자 역

시 법관경력 중 형사재판의 경험은 짧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심각함과 전관예우의 우려는 짧은 기간 내내 절감하고 있다.

전관예우의 경우, 법관들이 말을 아끼는 편이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나, 판사들은 누구나 선배들이 재직 중 법원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퇴직 후에도 얼마간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고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최종 근무 부서의 사건수임은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의치 않아 보이므로, 변협에서 회원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입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광역이나 장기간에 걸친 수임금지는 문제가 있으나 퇴직 직전 담당했던 부서의 동종 재판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든 그 실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전관예우와 합하여 동전의 앞?뒷면처럼 재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겠다고 저지르는 범죄,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탐하여 저지르는 범죄와 이른바 생계형 범죄 사이의 양형상 형평성 문제는 일률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원의 양형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하므로, 취임 후 깊이있는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재판결과 못지 않게 절차상 느끼는 위화감이 실제 이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허탈감을 증폭시킨 면도 있다. 당사자는 재판도 결국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임한다는 것이 그간 보고 느껴온 바인데, 예컨대 로비에 능하게 살아온 피고인은 재판도 그 방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구치소 내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재직 중 어느 부서의 재판을 맡은 초기에 우리 사회가 로비공화국인가 하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구치소 내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신임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불구속 재판의 구현은, 자칫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만 구속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또 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5. 법원행정의 요체는 인사다.

어느 직원이 어떤 직분을 맡는지, 어느 법관이 어떤 인사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이를 지켜보는 동료?후배의 사기와 직무 태도를 좌우한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법원구성원에게 보내는 최대의 메시지이므로 신상필벌이어야 한다.

초임때 필자는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이른바 한직으로 돌고 인간관계 능하고 요령있는 직원이 좋은 보직에 가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이는 거대 법원의 법원장이 수많은 직원과 법관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의 구분이 준엄치 못하고 연분을 가벼이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평정은 참으로 지난한 문제다. 근무평정 때문에 배석판사가 부장판사나 법원장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느끼는 후배 판사들의 기백없음을 탓해야 할지 선배 판사들이 신뢰받고 있지 못함을 자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행 평정제도는 판사로서의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기능은 하고 있으나, 평정우수자 간의 선발이나 보직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

인사를 법원별 자치에 맡기는 것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법원장의 직원이나 법관들에 대한 평정과 보직, 징계에 관한 권한은 물론 그 임명에 관한 권한까지 각급 법원에 대폭 이양하여, 광역으로는 고등법원별로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고등법원장은 다시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별 단위 법원에 위임케 하면 좋겠다. 지역?심급 별로 법관을 따로 임용함으로써 경향교류?순환보직?항소심 재판장 선발문제를 모두 자치에 맡기도록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정의 방법과 내용을 각급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 그와 같은 결정에 따라 누가 고등부장 직에 보하게 되는지는, 지금과 같이 전국적 규모로 본인과 주위의 지인들에게 승진 탈락의 허탈감과 상처를 주는 일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만이 문제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이 있겠으나 행정도시 건설 등이 시행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재판부가 충분히 들어주도록 더 많은 법관의 증원과 법원의 증설을 요구하는 안팎의 요구에 대해, 조직이 방대해지면 인사와 전국적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종전에 있었으나,

법원은 일사불란하거나 통일적으로 장악되지 않을수록 좋은 조직이 아닌가. 법원행정처의 지역별 자치가 이루어지면 이름뿐인 판사회의도 정상화되고 직협도 내 고장 법원 사랑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6. 법관과 법원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은 재판이 이루어진다.

의사가 밤새 진료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한다면 환자가 불안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법원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이 밝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직원이든 법관이든 야근의 빈도와 시간을 줄이고 토요일휴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판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혁을 기대하기를 바란다. 9시 뉴스도 보고 신간도 읽고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는 인간성이 풍부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대책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만 강조하기보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서 신속에 능한 법관은 신청?파산?소액 재판부에 보하고, 합의부나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에 주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등법원의 민사항소심 사건을 접수 2년만 지나면 장기미제로 분류하여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 올바르게 나오거나 오판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판이 빨리 끝나서 명판결이라고 회자된 경우는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을 신명나는 일터로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즐겁게 돌아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손님을 맞을 직원들이 신명나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되, 국민의 이름을 빌어 법원구성원을 몰아치기보다는 자주 포용하고 사랑을 많이 표시해주면 좋겠다. 법원내 최고의 선배인 대법원장이야 후배인 법관과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겠는가만, 역대 대법원장마다 그 표현에 인색하여, 직원이나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한다. 점심도 혼자 외롭게 들지 마시고 더 많은 법원구성원들과 만나고 접하여 스킨십을 넓히고 연로를 통하게 해야 한다. 연로가 막힌 조직은 경혈이 막힌 몸처럼 병들고 노쇠해진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실현할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사법부의 수장답게, 법원 내부에서도 막힌 곳을 뚫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7. 양성 평등을 기대한다.

여성은 법원 내 소수자가 아니다.

원고나 피고, 피고인, 증인 중 절반은 여자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다. 수요자 중심으로 보면 최소한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형사부만이라도 재판부마다 여성법관이 한 명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등의 재판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남성법관일지라도 여성법관보다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관의 실력과 인품, 살아온 경력이나 성향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각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만, 그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젠더의 차이라고 느낀다. 여성법관의 비율이 점차 재판 당사자의 비율과 같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법원의 궁극적 모습이므로,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신앙으로나 인품으로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식에 투철할 것이라 믿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 조직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가임기 여성법관의 증가로 법원 업무나 사무분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법관들 사이에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가 공동부담할 몫임을 확고히 천명하여, 더 이상 젊은 여성법관들이 죄의식을 안고 근무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소망한다.

법원에 성차별은 없었다는 것이 남성 법관들의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성차별은 없었다는 것이 여성법관들의 생각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의 심의관 등에 비해 달라는 여성법관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조사심의관에 1명씩 총 2명을 보한 것이 전부다. 장차 실?국장으로 일해야 할 시기가 오면 심의관 등의 보직경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할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야근이나 회식을 건달 책임자가 없다는 주장은, 무리한 시간외 근무에 의존하는 법원의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보다 고치고 바꿀 것이 더 많다고 절감하는 우리 여성들은, 변화하고 진보하는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직

도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 층은 남성이며, 심각한 출산을 저하는 다 현 사회구조가 자초한 것이다.

8.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환자의 치유는 어렵다. 당사자는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보여 주고 증인은 진실을 말하며 원고와 피고,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법원이 좋은 재판을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환자가 환부를 감추고 증인은 거짓증언을 하면서 법원의 진단과 처방이 올바르게 기대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협조를 구하고 재판에 대한 불만을 직접 경청하며 대화하면 법원의 권위가 손상되었는가, 재

판의 신뢰가 훼손되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원을 찾는 국민은 모두 무엇인가에 상처받아 아픈 사람들이다. 법원이 사회 내 다수와 소수를 모두 아우르는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되려면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 온 국민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기만 한다면 재판의, 법원의 신뢰는 반 이상 회복된 것과 같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을 맞아 국민들을 최고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법원에도 국민들의 격려와 사랑이 아쉽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법감시도 걸림돌 판결 못지 않게 디딤돌 판결을 많이 찾아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격려도 해주기 바란다.

II 기고

박재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시 31회)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 이용훈 대법원장님께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탁월한 능력과 두터운 신망을 쌓아 오신 대법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넘치는 경륜과 혜안은 물론 추진력까지 겸비하신 분이신데다가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남기시리라 믿습니다. 지려천박한 제가 무엇을 더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겨자씨만큼의 보탬이라도 될까 하여 감히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언론을 확대하시라는 부탁입니

다. 대법원장님께서서는 오랜 법관생활과 아울러 그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법원 내부와 외부의 더욱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견수집과정에서의 왜곡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대법원장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혹 대법원장님의 심기를 거스릴까 염려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로를 넓히고자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신하의 직책 가운데서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충고를 하는 언책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아랫사람의 처지에서 윗사람의 실수를 따지는 것인 만큼, 임금이 비록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서 뜻을 굽히고 따른다고 해도, 저 유순하고 마음 착한 선비들은 오히려

려 지레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바른 말을 하면 노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곧고 강직한 신하가 아니고는 누가 기꺼이 나서서 전하께 바른 일을 하도록 권할 수 있겠습니까?

1611년 광해군 3년 별시문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라는 광해군의 책문에 대하여 임숙영이 작성한 대책 중의 일부입니다(김태완 짓고 해석,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2004), 46면). 지금 법원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른바 법원의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칫하면 대법원장님께서는 임기 내내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법부를 건설하여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경계하셔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 의견들의 배경과 서로의 관련성 등에 유의하셔서 말하는 자들이 하지 못한 말과 실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까지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소망이 현실을 이끄는 것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선 소망마저 현실에 갇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의 기본적인 목표설정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람직한 법관상’, ‘바람직한 법원상’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한 것인 이상, 위 문제는 국민들이 어떤 법관, 법원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답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비판이 비록 비합리적인 부분도 간혹 있고, 일견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그 근거를 흐르고 있는 일관되고 정당한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이러한 요구사항들 중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크게 보았을 때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법관상’과 ‘바람직한 법원상’ 중에서 ‘바람직한 법관상’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재판은 법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법관상이 정립되면 바람직한 법원상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관이 바람직한 법관인가에 관하여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국민들의 바람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들의 사건에 법관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

을 기울여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하여 주고, 그 결과 내린 결론이 때로는 힘 있는 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 효율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각론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에서는 개개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그로부터 당사자들이 얻는 만족감이나, 재판의 독립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보다는 통계를 측정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나 그때그때의 역점과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강조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암울했던 기간 동안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법원이 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국민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정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관들의 마음가짐은 결국은 법관이 몸을 담고 있는 법원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법관들의 마음가짐을 도외시킨 채 다른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설사 어떤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하더라도 결국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바람직한 법원은 법관들이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법원시스템 특히 인사시스템에 관하여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관인사시스템은 법조일원화, 대법원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해소 등 다른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들과 땀겨야 땀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조일원화만을 들어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법관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을 개선함이 없이 제대로 변호사를 안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더군다나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력이 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력보다 더 많다는 대목에 이르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가 법조일원화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관상이 앞서 본 바와 같다면 현재의 법원시스템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조직 전체의 사건처리의 효율성, 그때그때의 역점 사업의 달성이 과도하게 중시되고 있는 현재의 법원시스템에서 너무도 쉽게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통계와 근무평정인데,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측정이 불가능하여 이에 관하여는 통계처리도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의 피라미드구조의 인사시스템 특히 고법부장승진 등의 승진제도와 결합하여 그 폐해가 결정적으로 증폭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도 조직인 이상 승진제의 존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이는 일면 타당하지만, 일면 부당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승진제도는 승진한 사람에게는 승진제도지만,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파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관에 대한 사실상 파면제도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폐해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진에 누락되어 시작하는 것을 마치 법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시스템에서 승진에 누락된 법관들이 머무를 곳은 없습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은 승진에서 누락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는 것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견해는 선후, 경중을 전도시킨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곧 법관들이 사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와도 법관들이 사직을 하고 싶어도 못할 뿐 지금의 법원이 법관들에게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을 것이고,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 법관들은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한 경향은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더 일찍부터 더 많이 판사들이 평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평정제도를 두고, 그것을 강화한 이상 그 대상인 법관들이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평가의 결과가 중국적으로는 사직시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 법관들은 어느 순간 사건 자체보다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마음보다는 평가자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

스럽습니다. 이는 결코 법관에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유종원의 종수곽타전전의 일부를 옮겨 봅니다.

곽타타의 본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곽사병을 알아 허리를 굽히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낙타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탁타'라고 불렀다. (중략)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다. 무릇 장안의 모든 권력자와 부자들이 관상수를 돌보게 하거나, 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과수를 돌보게 하려고 다투어 그를 불러 나무를 보살피게 하였다. 탁타가 심은 나무는 옮겨 심더라도 죽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도 일찍 맺고 많이 열었다. 다른 식목자들이 탁타의 나무 심는 법을 엿보고 그대로 흉내 내어도 탁타와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가 많이 열게 할 능력이 없다.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그 본성이 잘 발휘되게 할 뿐이다. 무릇 나무의 본성이라 그 뿌리는 퍼지기를 원하며, 평평하게 흙을 복돋아주기를 원하며, 원래의 흙을 원하며, 단단하게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 일이다. 가고 난 다음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심기는 자식처럼 하고 두기는 버린 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무의 천성이 온전하게 되고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자라게 하거나 무성하게 할 수가 없다. 그 결실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일찍 열매 맺고 많이 열리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식목자는 그렇지 않다. 뿌리는 접히게 하고 흙은 바꾼다. 흙 복돋우기도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한다. 비록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치고 그 근심이 너무 심하여, 아침에 와서 보고는 저녁에 와서 또 만지는가 하면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살핀다. 심한 사람은 손톱으로 껍질을 찍어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사하는가 하면 뿌리를 흔들어보고 잘 다져졌는지 아닌지 알아본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무는 차츰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해치는 일이며, 비록 나무를 염려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독법, 돌베개(2005), 514면 이하)

곽타타가 기른 나무가 잘 자란 것은 나무가 관리될 수 있는 부분보다 관리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도, 법관의 마음도 같은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맨 위 옥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높은 곳의 콘크리트 바닥에도 어디에선가 씨앗들이 날아왔는지 풀들이 자라고 있어 놀랐는데, 그보다도 그 풀들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곤 자연의 섭리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대법원장님께서도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에 이끌어 적어보았으나, 두서없는 글로
마음만 어지럽혀 드리기만 한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해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장님의 시대가 진정 우리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역사
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9. 25. 박재완 올림

서면인터뷰 답변

A판사 : 지법 부장판사급(사시 25회)
B판사 : 지법 부장판사급(사시 28회)

한동수 특허법원 판사(사시 34회)
C판사 : 지법 판사급(사시 41회)



1.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오랫동안 법관으로 봉직해 오신 지라 더욱 체감하실 터인데, **현행 법관근무평정제도가 평정 대상자인 하급 법관들을 점수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 등 법원 인사제도가 관료제도의 틀에 얽매어 있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1-1. 현행 법관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판사(지법 부장판사급, 사시25회) :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법관들의 의구심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이 바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제도는 법관의 품행을 바로잡고 재판능력을 제고시켜 질 높고 신뢰받는 재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옳고 그름의 결론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회와 단절된 채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객관적

인 내외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투명하게 그 능력과 업적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을 더욱 더 성장시키고 “좋은 재판”이라고 하는 품질 좋은 사법서비스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법관에 대한 평가야말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용한 촉매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법관은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자아로부터도 독립하여) 심판을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에 대한 제3자의 근무평정 또는 평가라는 것은 평가주체가 인사권자가 되었든, 아니면 언론이나 NGO가 되었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법관은 자신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높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도에서 법관은 그 역시 인간인지라 자신이 한 재판이 좋게 평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평가자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가제도는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과연 이 아닐 정도로 해서는 아니될 자신의 인사상, 사회평판, 즉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위험성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판사가 좋은 평판, 평가만을 고려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양날을 가진 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쪽 칼날이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평정 일변도의 드리브로 인하여 그 결과 판사가 평정에 연연하여 재판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만에 기초하여 평생서열을 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반성 하에서 평정제도를 활용하기로 법관사회 전반의 동의를 받은 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차제에 10여년을 운영해 온 근무평정제도의 경험을 토대로, 그 공과를 예민하게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제도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의 기본 목표가 우수한 법관과 그렇지 못한 법관을 구분하는 수단으로 그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만일 평정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 법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인사에 반영하여 그를 도태시키는 자료로 삼아 버리고 만다면 이 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나쁜 평정을 받은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평가는 잘한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감동어린 채찍이 되어야 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분발하여 자기 교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따스한 격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법관에게 재판을 받더라도 균일하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의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법품질의 총체적 향상에 그 제도의 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사시 28회) :

자의적으로 근무평정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평정자의 관심 및 취향에 법관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일부 있음. 대안으로 평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를 더 늘리고 이를 객관화하되, 5등급을 3등급 정도로 축소하고 그 기능을 순위 획정 기능에서 적격, 부적격 구별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C 판사(지방법원 판사급, 사시 41회) :

법관근무평정제도는 평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또는 평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평정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관료화와 판사의 평정권자에 대한 예측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낳을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가 매년 평정기준의 합리성,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구체적인 평정기준을 항목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판사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정의 방식에 관련하여, 통계를 통한 계량화, 점수화는 재판업무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서술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 또한 평정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판사 개인의 업무수행능력, 적성, 기타 특수한 경력 등과 같은 긍정적인 항목에 관한 평정의 경우에는 통계를 활용하되, 주로 네거티브한 방식의 평정이 옳다고 생각하고(예컨대, 사건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실성을 의심할 만큼 사건처리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평가방식), 이에 비해 판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비위사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항목에 관하여는 평정권자가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비위사실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평정대상자의 이의 내용을 함께 기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과 같이, 법원장에 의한 단독평가는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면평가방식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동수 판사(사시 34회) :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근무평정이 작용하는 계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부장 '승진' (법원조직법상 고등부장으로서의 승진 개념이 없으나, 승진이라는 관용적 표현에 따른다) 시에도 근무평정이 절대적인 선발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평정 이외에 당사자의 의사와 적성 등 다른 요소들도 참작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정은 특정의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소극적인 계기에만 판단자료로써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정권자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평정권자를 1인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평정의 정확성을 놓칠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평정을 받게 되는 법관도 평정권자를 의식함으로써 합의체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재판업무의 처리방식을 변형할 유혹을 받게 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제한조건을 가하여 배석판사, 상급심판사, 동료 법관, 필요하다면 법관이 아닌 그룹 등을 평정권자

에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평가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을 정하는 근본전제로서 과연 바람직한 법관상은 무엇인지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 사건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재판관의 행사가 왜곡될 염려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평가의 등급을 지나치게 세분하거나 상대평가방식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2.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발탁)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판사 :

단일호봉제가 시행됨으로써 평생 법관으로 봉직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심급제하에서 고등법원 판사자격과 지방법원 판사자격이 불가피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까만, 기존 공식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법부장 발탁과정에서 탈락한 것에 따른 명예감정의 손상, 그로 인한 중도 퇴직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로서의,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로서의 나름대로의 소질과 역량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법원 판사로 우수하게 평생을 봉직한 사람들에게 제도 후일 법원장이나 최고법원의 판사 자리를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일한 지방법원의 판사로서 소임을 다할 판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법부장 판사 제도가 법관의 관료적 승진채널의 주요한 관문으로 되는 길을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법원 내부적으로도 여러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관들 스스로도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묵묵하게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최고의 판사라고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처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이라면 그 자체로 일생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담백한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슨 행정부의 관리 어떤 자리와 비교하는 식의 법원 내외부의 인식부터 고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한 남아 있는 몇가지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다만 고법부장 판사 제도가 전관예우의 주범이고 만악의 근원이다 하는 식의 주장에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는 듯합니다. 평생 돌아가면서 안주하여 자리를 주고받는 식으로 살아서는 법관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경쟁은 법관 사회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기본 작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러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운용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편 장차 고등법원은 경력이 유사한 법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다소 고법부장 보임기회는 조금 확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판사 :

고등판사 직급을 창설하고, 고등판사는 고등법원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충원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대상자가 지원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를 선발하며, 고등법원은 이와 같이 충원된 비슷한 경력의 고등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즉, 고등판사 자체를 지법판사와 별개로 전보한다. 단기간 내에 고등판사가 충원되고 나면 그 이후 이른바 '고등부장' 승진 요인은 고등판사의 결원과 같이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것임.

C 판사 :

현행의 고등부장 발탁제도가 사법부의 관료화를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중견법관의 사직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신규 판사를 선발하는 현행의 제도 하에서 고등부장 발탁제도 이외에 판사들의 나태와 도덕적 해이 등을 제어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 판사들이 그 업무 면에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고등부장 발탁제도로 인한 문

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승진과 그로 따른 경쟁요인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승진 체계를 최소화, 단순화하고, 승진의 기회를 1회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면서 승진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승진 탈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단기적으로는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범위의 기수로 제한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고등부장으로의 발탁을 신청한 경우에만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삼되, 그렇지 않고 1심 법원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심, 2심 판사 준별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동수 판사 :

현재의 고등부장 승진제도는 고등부장으로 승진되지 못한 20여 년 경력의 법관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고, 판사들을 서열화하는 핵심고리로 작용한다. 고등법원 재판부의 구성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예산이나 직위와 대우, 사법부의 권위 등에 주목하지 말고 최종적인 사실심인 고등법원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야 한다. 현재의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부장이 정년까지 법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의 처우와 보직 등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간격을 줄이는 방향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현행 각급 법원의 합의부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대법원장이 개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A 판사 :

현행 합의부는 합의부로 기능하기 보다는 경력이 짧은 배석판사를 위한 일종의 도제식 교육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조일원화,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을 전망해 볼 때 1심 법원은 점차적으로 단독심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단독재판장은 법조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담당하고, 그러한 단독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함과 아울러 실무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미국식 law-clerk 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력이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합의제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특수분야의 재판에 대하여는 관련 외부 전문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판사 :

1심 법원의 경우 합의부 구성원 간에 경력차가 너무 뚜렷하여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곤란함. 1심 법원의 단독화를 원칙으로 하되, 법조일원화의 틀 내에서 예비판사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

C 판사 :

현행 합의부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1심의 경우 부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심의 경우에도 업무효율을 위해 주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주심의 경우 합의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재판장이 맡고, 2심 법원의 경우 경력이 비슷한 3인의 판사가 실질적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급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이른바 1심, 2심 판사 준별 제도). 이를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제도, 법관임용제도, 법관승진제도, 대법원의 기능 정상화 문제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한동수 판사 :

1심 법원은 단독재판부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합의부는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합의부의 구성은 재판장과 배석판사간의 경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체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장판사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건수도 최적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 또한 단독재판부가 사건의 난이도와 성격에 비추어 합의부의 심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이 송 등의 방법으로 합의부의 심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4. 현재의 법원행정처의 조직구성과 운영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법원장은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판사 :

21세기 법원경영, 법원운영은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로 법률을 전공한 법관이나 법원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원행정을 도맡아 전담하기에는 이제 법원의 규모도 커졌고 사법부가 국가사회, 국민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기능에 비추어 거의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하부조직의 기능적 재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법원행정의 개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이 마치 재판 일선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군림하는 외관을 가지는 등 관료적인 틀을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여 능동적으로 법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각종 제도의 개선, 개혁을 위한 정책방안의 고안, 연구 등은 별도의 사법정책연구기구를 설립하여 그곳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법조인, 학자, 외부인사가 유기적, 입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 판사 :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선도기능에서 지원 내지 중계기능으로 전환함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는 일 중 각급 법원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술단체 구성원이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C 판사 :

현행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실무와 집행을 담당하는 권한이 법원행정처로 집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발맞추어 사법부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중 상당부분을 각급 법원장에게 이양하고, 각급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판사회의의 내실화, 실질화가 전제되어야 함).

한동수 판사 :

법원행정처는 효율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고 날로 그 역할이 강화되어 가는 것 같다. 각종의 예규를 작성하거나 재판에 관한 지침이 담긴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법관이나 일반직들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 법원행정처의 근무경력보다 재판경험이 더욱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 중 일부를 각급 법원의 장이나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맡겨야 한다.



2. 사법부의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해

소장판사들이 정치권력에 굴복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할 것을 요구했던 3차 사법파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를 털고 새출발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법원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판사 :

이 시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개방화, 민주화에 힘입어 권력에 의한 사법부 독립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라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떠한 경위로 누구에 의하여 그러한 조직적, 구조적 침해행위가 있었는가를 역사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역사는 언제고 그러한 부정을 광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그 때는 비록 성공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과 정의는 역사 앞에서 백일하에 다시 드러나는 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음험한 시도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고백의 기반이 없는 한에서는 아직 미완의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 판사 :

대법원장은 법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사법부의 과거에 어두운 면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재심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C 판사 :

사법부의 과거 어두웠던 역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자기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재심요건의 완화를 통해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한동수 판사 :

대법원장 취임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재판을 통하여 서서히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이 가슴에 품고 있는 대표적인 불신과 절망을 국민이 확인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법권을 창출한 국민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소한의 본질적 기능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법조윤리에 대해

결국 법관 인사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고법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판사들이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고위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의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판사 :

사법부 자체적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전관예우, 유전무죄로 대변되는 재판의 불공평성과 부패를 문제 삼아 법원과 법관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왜 이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는 것처럼 청렴하고 올곧게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일

단 퇴직 후에는 전관이라는 허명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에 걸맞지 않게 곤경에 처한 의뢰인으로부터 투여한 노력과 전혀 비례하지 못한 과도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용인되는 이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조치의 입법적 타당성 논의와는 별도로 법관들은 이제 자기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당한 일에는 장차 변호사가 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스스로 천명해야 합니다. 기득권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과감하게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이야 말로 법원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B 판사 :

주로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만큼, 항소법원을 중심으로 계량 가능한 범죄부터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내부적 통제를 할 기준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원적으로 전관 변호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 사직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 판사 :

고등부장에서 탈락한 부장판사들로 인해 전관예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고등부장 발탁제도를 개선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출신 전관의 문제, 고등부장, 대법관 출신 전관의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고등부장 발탁제도의 개선은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사실 개업지를 제한하거나, 개업시기를 퇴임 후 일정기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법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전관출신 변호사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재판장에 대해 징계 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한동수 판사 :

사실 전관예우 논란은 상급법원에 올라 갈수록 크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료 법관에게서 대법관으로 취임할 때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후배 법관들에게 귀

감이 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셔야 한다.

4.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

4-1. 개별법관의 독립을 위해, 전반적으로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에게 중앙 집권적인 통제권을 보다 강력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판사들이 자율적인 재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판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판사 :

당연히 판사들이 자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러한 자율적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엄정하게 파악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 중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그 뉘앙스를 달리 풀어서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어서 선례구속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 법원으로서의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사건이 아닌 한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건이 중국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요하게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례로 굳어진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를 정립하여 소신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사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만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 직무자세인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의 세계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살아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해 충돌로 대립하는 분쟁을 정리하여 평화를 만들어 내는 현장이 재판인 것입니다. 이 한도에서 대법원 판례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시대정신과 환경이 변하여 그 가치기준이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하여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해 줄 때가 무르익었는가를 예민하게 분간해 내는 것도 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여 대법원 판례에 거스르는 판사가 밍보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저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진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판사마다 제각기 통일되지 못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고려에서 모범적인 관행을 중앙에서 수집정리하여 이를 일선 재판부에 전파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법원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판제도의 개혁, 재판관행의 개선노력을 원만하게 일선 재판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은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래 방식에 익숙한 법관들로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관리에 대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어 그것이 재판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변화와 개선의 과정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선 재판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에 접목가능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탁상공론성, 전시행정성 개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B 판사 :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규 및 통계에 의한 통제가 많음. 법원행정처의 의도대로 각급 법원이 운영되지 않을 때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있는 기획법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획법관은 평소에는 법원장을 보좌하여 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고, 재판부에 결원이 생기는 특별한 상황에는 대리재판 요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사권을 포함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권한을 고등법원장 등에게 위임함이 좋다고 봅니다.

한동수 판사 :

대법원장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통제는 법관의 독립과 상치되는 부적당한 표현이다. 법관들이 당사자와 사건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독립적으로 소신있게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들의 문화와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4-2. 대법관 전원예 대한 임명 제청권 행사, 전국 법관의 근무 평정과 임명, 보직 부여, 징계권 등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분산시켜야 하는 권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판사 :

일단 상당부분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무평정과 보직부여, 즉 사무분담 사무는 기왕에도 법원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B 판사 :

고등판사 직급 제도의 창설 및 지역법관 제도 정착화로 인사요인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범위 내 법관의 전보인사 권한은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C 판사 :

사법행정권을 대폭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하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일선 법원장에게 대폭 이양될 경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당해 법원의 행정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근무평정과 보직부여는 현재 각급 법원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고, 판사에 대한 임명권, 징계권에 관하여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심의기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예컨대, 법관인사위원회가 인사안을 복수로 마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식, 한가지 안을 제안한 경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방식 등).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헌법 사항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다만 현재 대법원에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앞서 든 예와 같이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운용할 수는 있다고 봄).

한동수 판사 :

법관의 인사에 관한 권한 일부를 고등법원의 장에게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판관련사항 중 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향후 법원장 등의 인사나 중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법관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5.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5-1.국민들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이것의 시정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판사 :

최근의 사법개혁작업으로 국선변호기회의 확대, 불구속 재판의 확대 등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관하여도 일정한 객관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B 판사 :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선거범죄 사건에 관하여 재판처리절차 및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각급 법원이 이를 존중하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법원도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에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C 판사 :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소송구조의 확대가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대법원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밖에 전관예우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음

한동수 판사 :

유전무죄라는 하소연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주로 뇌물, 선거, 경제사범 등의 형사사건에서 의 양형이 과연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충실한 양형심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5-2. 국민들의 이야기를 재판부가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법관의 증원과 더 많은 법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판사 :

전향적 입장에서 법관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군법원과 같은 소규모 법원의 확대시행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B 판사 :

법령 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과 행정부 및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법령 제정이 아니더라도, 1심 법원의 단독화를 통하여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재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C 판사 :

법원의 증설, 법관의 증원은 대법원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동수 판사 :

1심을 단독재판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판부를 대폭 증설하여야 한다.

재판을 하는 법관들 개개인이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내면화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법관들에게 여러 프로그램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주요답변 모음

■ 인사청문회 답변으로 보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의 '대법원장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법부의 오욕의 과거사 문제 해결, 법관인사제도 등의 제도개혁, 그리고 전관예우와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같은 법관윤리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 과연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현장질의에 대한 답변과 청문회 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주요 부분을 골라 소개한다. 답변을 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청문위원들의 질문내용도 모두 실어야하지만 지면상 간략하게만 소개하며, 답변내용은 가급적 생략없이 실고자 했다. 여기 실린 것들의 출처는 이용훈 대법원장(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국회가 작성한 인사청문회 회의록이다.

주제구분	질의자 및 질의내용	이용훈 대법원장 답변
과거사 반성 및 새출발	[질문자 : 문병호 위원]...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우리 국가권력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그 인권 탄압한 마지막 받침대가 바로 법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법원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과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첫째로는 재판의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적 청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위 부당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법원 자체 내에서 옛날의 판결을 다 뒤져서 과연 그런 판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재심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구체적 사건에서 해결할 것이고, 인적 청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사법부에서 요새 신문에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면 남는다고 그러면 과거의 판결을 한번 뒤져서 과연 법원이 어떤 일을 해 왔는가 한번 반성하라, 그런 요청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개개 판사들의 독립성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9.8 청문회 답변)

법관근무 평정제도	[서면질자 : 우윤근 위원]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습 및 근무평정제도에 대한 견해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습은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법관 개개인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근무평정제도는 법관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공정성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일선 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청문회 서면답변)
	[질문자 : 우윤근 위원]...법관인사위원회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도 있고 또 고등부장과 지법부장 간의 순환 보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해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아 가지고 판사들의 여론을 죽 살펴 가지고 그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제도를 막상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인준을 받아서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인사제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근무평정에 관해서 판사들 불만이 많아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9.8 청문회 답변)
	[질문자 : 주호영 위원]... 지금 법원장이 전권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원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법원장 특유의 사람을 보는 시각에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거나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단위 법원에 있어서 법관의 확립화 내지는 법원장에 대한 무언의 복종을 강요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는 내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옛날에도 인사는 대개 법원장들의 평가를 위에 상신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원장한테 굴종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고 자주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권 독립은 결국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상사로부터 개개의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평정 제도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9.8 청문회 답변)
법관인사 제도일반	[질문자 : 박상돈 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안 되면 그때 큰 상처를 입고 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인사제도의 결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일호봉제와는 또 다른 승진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원의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법관 인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 위원장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면서 여러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75%가 찬성하는 안대로 인사제도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또 한 70% 되는 판사가 이제는 반대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사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 인준을 받아서 취임하게 되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평가는 전면적으로 개편할까 합니다.(9.9 청문회 답변)
법관조기 퇴직	[질문자 : 문병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법관이 젊었을 때 법관 하고 나이 먹어서 변호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한 번 법관이 되면 평생, 60세, 65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밝혀 주십시오.	아마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재야의 사정이 나빠져서 변호사를 할 수 없게 금방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65세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만간 해결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9.8 청문회 답변)
고법 부장제도 등 법관계층 구조개선	[질문자 : 문병호 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없애고 심급제를 새롭게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는 1심도 사실심이고 2심도 사실심인 그런 구조 아래서는 없애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고등법원을 사후심화해서 1심 재판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법원으로 만든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는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9.8 청문회 답변)
	[질문자 : 문병호 위원]...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재판은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상급 법원 판사 또는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판사에 의해서 하급심이나 직급이 낮은 판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화되어 있는 사법구조의 계층을 조금 더 단계를 축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관료화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위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말대로 재판하던 사람이 대법원에 와서 대법관 되는 것을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대체로 자기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힌 사람들이 대법원에 와서 대법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실입니다. 지금 외부에 알려지듯이 위사람들의 말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법관이라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승진단계를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진의 개념보다는 이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보직의 개념화로 됐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에 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느냐 그르냐의 문제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단일호봉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관해서 인사운영에 있어서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9.8 청문회 답변)

집권적 사법 관료제도 개선	[서면질의자 : 장윤석 위원] 현행 수직적, 집권적 사법관료제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수평적, 분권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그간 사법부의 운영에 있어서 사법행정 조직의 비대화, 근무평정에 대한 지나친 관심, 고등부장 보직인사 등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 개개의 재판부가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으면서 재판작용을 통하여 국민을 섬겨야 하는 사법부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 스스로가 법관다워지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법관 스스로가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열정을 오로지 재판에만 기울여 소신있는 판단을 하고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청문회 서면답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서면질의자 : 이명규 위원] 대법원 구성을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인사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법원이자 최고의 법률해석기관으로서, 법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밝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이와 같이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청문회 서면답변)
	[질문자 : 우윤근 위원] 우리나라는 그간 너무 서열과 연공 위주의 대법관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점, 법관의 다양성 ...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이끌어 내실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필요합니다. 연령과 지역 이런 것에 관계없이 소위 외부인사의 수혈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9.8 청문회 답변)
대법관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서면질의자 : 주호영 위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방향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공개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결과 공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추천받은 사람 및 자문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추천받은 후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이해상반된 이익단체 간에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비공개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법관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청문회 서면답변)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개업	[서면질의자 : 우윤근 위원] 보다 바람직한 고위 법관들의 퇴직 후 상황에 대한 의견은	고위직 법관이라도 퇴직한 이후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의 제도하에서, 대법관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의견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체지역개발 등 향후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함(청문회 서면답변)
	[질문자 : 나경원 위원]...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대법원장을 퇴임하신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의 경우에도 새로 제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짐을 받으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퇴임한 후에 다른 어떤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새로 제청되는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를 바로 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에 한 번 강의를 간 일이 있는데, 그때 학생이 “당신 대법관으로 나와 가지고 변호사 하면 전과예우받고 돈도 벌고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강의 간 선생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리라고는 예상도 못 하고 갔다가 아주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내가 사건을 맡았다고 전과예우해 가지고 사건의 판단을 그르치면 그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대법관으로 퇴임하면서 판사 생활하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생활이 그렇게 유족하지 못하는데 변호사도 못 하게 하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가 그것을 책임진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 좀 참아 주면 어떨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9.8 청문회 답변)
법관윤리강화	[서면질의자 : 조성래 위원] 현재 법관징계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법관 징계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법관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종래보다 더욱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사직서 제출로 사안이 종결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사개추위에서 현재 법관으로 한정된 징계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하여 일반 시민도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관징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관징계법이 개정되어 일반시민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징계절차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함. 위 법관징계법 개정시 또는 그 시행과정에서 법관윤리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규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청문회 서면답변)
	[질문자 : 문병호 위원] 외부 견제가 없을 때는 내부 견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법원의 내부 견제, 스스로의 자정 역할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원 안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법원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9.8 청문회 답변)

법관 윤리강화	[질문자 : 김정권 위원] 법관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법관징계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하다고 어제 동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관징계위원회 제도를, 법원 내부에 있는 7명을 외부 인사로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에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9.9 청문회 답변)
	[서면질의자 : 이명규 위원]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의미에서의 전관예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은 전관예우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일부 변호사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는 전관예우의 의심을 받는 일조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전관예우의 문제는 제도나 규정보다는 법조인의 양심과 윤리, 그리고 국민의식에 귀착되는 문제이므로, 법관과 변호사 및 일반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사건브로커 등 법조주변의 혼탁한 환경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청문회 서면답변)
전관예우	[질문자 : 노회찬 의원] (최근 논란이 된 법구회를 소재로하여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질의함)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 법관들이 전관이 무슨 사건을 맡아왔다고 그래서 봐주는 경우는 전혀 저는 못 보았습니다. 저는 대법관 퇴임하면서 5년 동안 변호사 했는데 '야, 이거 전관을 박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면구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혹시 전관한테 사건 맡기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갖다가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구조가 개혁되어야 되는 그런 대목도 굉장히 큼니다. 실제로 판사가 전관이 맡아오는 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그 사건을 봐주는 것은 저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9.8 청문회 답변)
	[질문자 : 노회찬 위원] 전관예우에 대해서 전관예우의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전관박대를 받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전관예우의 사례를 본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경우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문제는 물론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런 일은 잘 없다거나 그런 일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식으로만 자꾸 돌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전관예우의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형사 구속사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형사 구속사건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에서의 절차 진행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구속사건과 법정에서의 절차... 사법연수원을 막 나온 변호사와 원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와 섰을 때 차별이 생기거든요. 사건을 맡긴 당사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것인데, 첫째 문제는 구속사건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서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판사들에게 구속사건을 줄이도록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구속사건만 줄면 전관예우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 문제에 있어서의 전관예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긴 당사자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역시 법관들의 교육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 진행' 이렇게 추구하면 대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9.9 청문회 답변)
대법원장 권한 및 법원행정처 기능 조정	[서면질의자 : 박상돈 위원]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최근 사법개혁 작업을 비롯한 법원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법원의 인력과 조직이 거대해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인력과 조직 및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개선하기 위하여 대법원 등의 조직으로 권한이 집중된 것은 일용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러한 조직비대화와 권한집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임(청문회 서면답변)
	[질문자 : 주호영 위원]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간 법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 우대,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이 법원행정처가 본 재판에 어떤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판사들의 전반적인 요구는 법원행정처를 좀 축소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9.9 청문회 답변)
	[질문자 : 주호영 위원] ...혹시나 법원행정처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 여론 때문에 법원행정처 책임자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다양성 요구라든지, 혹은 수요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특정 외부인사 혹은 코드에 맞는 인사.....지금 여당 일각이나 일부에서 나옵니다.	행정처장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대법관이 되었느냐면 1981년인가 1982년에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대법관으로 보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처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그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바람에 사무국의 역할을 해야 될 행정처가 오히려 법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 말씀이 그런 취지라면 이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한 번쯤 재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법관들의 요구,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처가 말하자면 법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좀 막아볼까 하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9.9 청문회 답변)

대법원장 권한 및 법원행정처 기능 조정	[질문자 : 이명규 위원] 대법원장 혼자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각급 법원에 분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소위 말하면 행정부의 지방분권과 같은 이치로 각급 법원에 권한 이양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청이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방에 이양해야 될 권한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9.9 청문회 답변)
불공평한 양형 및 판결	[질문자 : 노회찬 위원] ...판결문을 보면 양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재직해 온 점을 감안한다', ... 또 어떤 경우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양형에 상당히 반영을 하는데,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판결문 중에 '피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혹은 '피고인은 농민으로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농사를 수십 년간 지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런 판결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자.....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우연히 저희 고등법원의 형사부 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각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 생각해 보라, 힘없는 백성들은 전부 다 형 받아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도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 고등법원에서 풀려 나가는 현상을 두고 어떤 국민이 사법이 정당하게 행사된다고 믿겠느냐? 당신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양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응당..... 당신들 1억 절도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실형 안 보내겠느냐? 그런데 회사 재산 300억, 400억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 사람들 집행유예가 뭐난 말이야. 그런 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담당판사가 변호사가 형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형사재판,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노회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9.9 청문회 답변)



참여연대와 짝 띄우는 희망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패추방 및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핸드폰 요금인하 및 시민권리찾기운동,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금부과 촉구 등 조세개혁운동,
썩고 낡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두 번의 낙선운동,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

벌써 10년입니다.

“아직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실 더 많은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mail : mc@pspd.org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과 더불어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영역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발족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일관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사법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일구어왔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의 무풍지대였던 법조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 대상이 되고있는 법조인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사법감시**를
95년 10월부터 발행해왔습니다.



사법감시는 현재 전국의 판사와 검사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사법감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회원(후원부서: 사법감시센터)으로 가입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513-088742-13-101 (예금주: 참여연대사법감시)
회원가입: 전화 02-723-0666(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송비 절감 등을 위해 변호사와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분들께도
사법감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자우편 발송신청 jwc@pspd.org

2005
新刊

國內 第一의 民法 KOMMENTAR!!

編輯代表: 郭潤直 編輯委員: 孫智烈·金滉植·梁彰洙



民法注解 (XVII) · (XVIII) · (XIX)

民法 전체를 條文順序에 따
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서술
하며 각 條文마다 중요한 判
決들을 引用해 判例理論을
밝힌 코멘타르이다.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民法注解(XVII)(채권 10) 734조~749조
民法注解(XVIII)(채권 11) 750조~757조
民法注解(XIX)(채권 12) 758조~76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31번지. 전화: 02-733-6771~3

圖書出版 博英社